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조형예술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조형예술학과 소속 교수들은 조형예술학과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조형예술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조형예술 교육 및 연구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며,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조형예술 연구에 필수적인 아래의 교과목은 학위과정 중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6조 (지도교수의 선정)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7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

연번	학 과	과정	내 국 인		외 국 인		비 고
			선 택 과목수	선 택 과 목 명	선 택 과목수	선 택 과 목 명	
1	조형예술	박사	1	영어(필)	1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국어, 노어, 서반아어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8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박사학위청구전

36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자격시험,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제출 자격 취득과 실기전공 박사학위PHD/DR를 위하여 학위논문과 관련된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전시는 개인전 혹은 공모에 당선된 초대 개인전이여야 한다.

2. 전시회 평가

전시회 기간 동안 서양화과 전임교수 전원의 평가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 학위논문 발표의 자격을 갖춘다. 전시회 이후에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할 수 있다.

3. 전시회 조건

전시회와 관련하여 전시장소, 작품 주제, 작품 수 등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여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회 작품은 논문의 주제와 동일하여야 하며, 화방사용규격호수 1000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여야 한다.

설치 혹은 영상작품의 경우에는 평면작품 1000호에 준하는 작품을 발표하며, 영상작품은 기획서, 드로잉 사본, 시각자료/텍스트의 프린트물, 동영상DVD 등 제작 자료를 전시 개최 1주일 전에 전임교수에게 전달한다.

4. 전시회 도록

전시 도록에는 반드시 발표 작품의 3분의 2이상의 이미지, 평론 혹은 본인의 작품 주제와 관련된 글을 삽입하고,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제9조 (예비발표)

학위논문 예비발표

학위논문 예비발표의 과정을 통해 본 심사를 결정하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한다. 예비발표 일정이 결정되면 7일 이전에 논문의 초안(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제외)과 발표자료를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제10조 (논문심사위원) 일반적인 규정은 학칙에 따른다.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1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